
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농 촌 활 력 과

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6. . .
발 의 자	김원섭 의원 외 1인

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원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6. . .

발 의 자 : 김원섭·양진오 의원(2인)

찬 성 자 : 김영태·김재우·김종화·김지식
김현경·박윤경·소진혁·신용하
유승현·이상호·이정호·이정희
이탕모 의원(13인)

1. 제안이유

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, 실태조사(안 제3조~제5조)

다.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
라. 자문위원회,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26조, 제33조, 제40조

나. 부서검토: 농촌활력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농촌특화지구”란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농촌특화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
2. 그 밖에 시장이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

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촌특화지구를 지정·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
2. 농촌특화지구 내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
3. 농촌특화지구 내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지원
4. 농촌특화지구 내 생활서비스 개선 지원
5. 농촌특화지구 내 환경 및 경관 보존 활동 지원
6.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
7.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·운영 지원
8.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위원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농촌특화지구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농촌특화지구 육성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농촌특화지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·연구소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

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위탁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농촌특화지구의 종류)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·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촌마을보호지구: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
2. 농촌산업지구: 농촌지역 내 공장, 창고,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·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
3. 축산지구: 가축사육 시설,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
4. 농촌융복합산업지구: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·제조·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
5. 재생에너지지구: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
6. 경관농업지구: 동종·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
7. 농업유산지구: 세계중요농업유산,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

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

②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사업시행자) ①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
4.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
5. 마을기업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

② 제2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.

③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

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사업시행자의 부도·파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

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1호,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

제33조(광역·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) ① 「지방자치

법」 제2조에 따른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(이하 “광역정책심의회”라 한다)를 두고, 시·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(이하 “기초정책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
2.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

3.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
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

③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
2. 사업계획

3.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

4.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
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

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시장·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(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)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검 토 의 건 서

부서명 : 농촌활력과

조 례 명	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□ 검토 사항 ○ 근거 법령 ▪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▪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 □ 주요 사항 ○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 : 농촌특화지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○ 지원사업(안 제6조) :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□ 검토 결과 ○ 2024년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활력과에서는 구미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○ 상위법령 제정 및 향후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○ 기대효과 :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소멸해 가는 농촌공간을 개선 ○ 소요예산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○ 문 제 점 : 해당사항 없음	

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5조(실태조사), 제6조(지원사업), 제9조(재정지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,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
-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향후 발생할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

4. 작성자

-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배달수(☎480-5792)